

#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

## 일부개정규칙안

### 1. 의결주문

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# 2. 개정이유

○ 전자서명수단을 대법원규칙으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전자서명수단만을 이용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전자서명법 제6조제2항이 시행됨에 따라, 전자문서 제출 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서명수단을 특정하기 위함

### 3. 주요내용

○ 전자문서를 제출할 때, 전자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함(안 제7조제1항, 제11조제2항제1호, 제11조제6항제1호)

### 4.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## 5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##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, 제1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“것을”을 “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인증서를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

는 방법

2. ~ 3. (생략)

③ (생략)

1. ~ 2. (생략)

④ ~ ⑤ (생략)

⑥ 제4조제1항제2호 법인회원  
(제25조제1항 각 호의 자 포함)  
으로부터 제4조제2항에 따라 전  
자문서 제출권한을 지정받은 소  
속사용자는 다음 각 호 가운데  
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전자문서  
를 제출할 수 있다.

1. 해당 전자문서에 등록사용  
자의 전자서명(서명자의 실지  
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 
말한다)을 하여 제출하는 방  
법

2. (생략)

정하는 인증서를 -----  
-----

2. ~ 3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1. ~ 2. (현행과 같음)

④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1. -----  
-----  
----- 것으  
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  
는 인증서를 -----  
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	
연락처	(02) 3480 - 1416